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 
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동 제출 면제 규정의 예외로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20.)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법 제9조제4항”을 “법 제9조제5항”으로, “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”를 “경정청구”로, “보정하거나 경정하는”을 “경정하는”으로, “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”를 “경정해야”로 한다.

2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

④ 법 제9조제4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
2. 수입물품의 규모·특성,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세액 신고·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)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2조의 4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4조제 1항에 따른 <u>경정청구서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법 제9조제4항의 “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<u>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</u></p> <p>2. 수입물품의 규모·특성,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세액 신</p>

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고·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법 제9조제5항-----  
-- 경정청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경정하  
는 -----  
----- 경정해야  
-----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74